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철도경찰 업무 수행 인력 중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24명은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 인력 2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 수행 인력 13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지방항공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12.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생활물류정책팀, 교통안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 한 직급 정원 52명의 존속기한을 2024

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일부 하부조직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항공자격팀”을 “항공자격국제협력팀”으로, “항공자격팀장”을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제12조제1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운영

14.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15.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교육정책의 운영

16.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의 수립·관리

17. 항공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18. 외국인 항공종사 고용에 관한 검토·추진

제12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자격팀장”을 “항공자격국제협력

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6.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개정 등 협상 지원

9.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8.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10.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제37조제1항 중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총계 “1,022”를 “1,013”으로, 일반직 계 “1,012”를 “1,003”으로,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1”을 “59”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3”을 “62”로, 항공사무관 “17”을 “16”으로, 철도경찰주사 “3”을 “2”로,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

는 사서주사 “65”를 “64”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4”를 “53”으로, 전산주사 “5”를 “4”로,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8”을 “7”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27”을 “1,018”로, 일반직 계 “1,017”을 “1,008”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8”을 “1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7”을 “66”으로, 항공사무관 “17”을 “16”으로, 철도경찰주사 “3”을 “2”로,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63”을 “62”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9”를 “48”로, 전산주사 “4”를 “3”으로,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8”을 “7”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345”를 각각 “1,333”으로, 행정주사 “40”을 “38”로, 시설주사 “151”을 “150”으로, 공업주사보 “27”을 “26”으로, 시설주사보 “216”을 “213”으로,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111”을 “109”로,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07”을 “205”로, 전기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9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345”를 각각 “1,333”으로, 행정주사

“37”을 “35”로, 시설주사 “144”를 “143”으로, 공업주사보 “27”을 “26”으로, 시설주사보 “211”을 “208”로,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111”을 “109”로,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07”을 “205”로, 전기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04”를 각각 “501”로, 철도경찰주사보 “161”을 “160”으로, 철도경찰서기 “195”를 “194”로, 철도경찰서기보 “62”를 “61”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04”를 각각 “501”로, 철도경찰주사보 “157”을 “156”으로, 철도경찰서기 “195”를 “194”로, 철도경찰서기보 “62”를 “61”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12”를 각각 “609”로, 행정주사·공업주사·항공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1”로, 항공주사보 “168”을 “166”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12”를 각각 “609”로, 행정주사·공업주사·항공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1”로, 항공주사보 “168”을 “166”으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을 각각 “39”로, 행정사무관 “7”을 “6”으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5”를 각각 “33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334”를 “332”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중 2. 제6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93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1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 중 “항공자격팀”을 “항공자격국제협력팀”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
규정,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별표 2]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22조제1항 관련)

소속	명칭	위치	관할 구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특별시(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은평구,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동두천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한정한다) 경기도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여주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횡성군, 양구군, 철원군, 홍천군(내면 자운리·창촌리·광원리·명개리는 제외한다), 인제군(북면 한계리·용대리는 제외한다)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근덕면, 원덕읍으로 한정한다), 강릉시(옥계면 남양리는 제외한다),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방림면은 제외한다), 홍천군(내면 자운리·창촌리·광원리·명개리로 한정한다), 인제군(북면 한계리·용대리로 한정한다)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근덕면, 원덕읍은 제외한다), 강릉시(옥계면 남양리로 한정한다),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방림면으로 한정한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논산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로 한정한다),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충주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경상북도 상주시(화북면으로 한정한다)
	예산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는 제외한다),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무안군, 화순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강진읍 동성리, 움천면, 작천면, 병영면,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은 제외한다)
	남원국토 관리사무소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진안읍 군하리·정곡리·연장리, 부귀면은 제외한다)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강진군(강진읍 동성리, 움천면, 작천면, 병영면,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으로 한정한다)
	전주국토 관리사무소	전북특별 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전주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진안군(진안읍 군하리·정곡리·연장리, 부귀면으로 한정한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진주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으로 한정한다),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경상북도 고령군(쌍림면 송림리·산당리·백산리·합가리·매촌리·하거리로 한정한다)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하양읍, 와촌면으로 한정한다), 영덕군, 울진군[금강송면 일부(광회리 광비2터널 울진방향 출구를 기준으로 구분)를 제외한다], 청송군(진보면 부곡리·후평리·추현리·합강리는 제외한다)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외서면, 사별면으로 한정한다),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단촌면, 의성읍 철파리·업리·원당리 일부(원당고가교 종점을 기준으로 구분)로 한정한다], 울진군[금강송면 일부(광회리 광비2터널 울진방향 출구를 기준으로 구분)로 한정한다], 청송군(진보면 부곡리·후평리·추현리·합강리로 한정한다), 영양군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은 제외한다), 창녕군, 함안군 경상북도 청도군(청도읍 유흥리·고수리·초현리·원리·월곡리·신도리, 화양읍 범곡리·동상리·동천리·합천리·서상리·신봉리, 풍각면, 각남면으로 한정한다)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외서면, 사별면은 제외한다),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은 제외한다), 칠곡군, 성주군, 의성군[단촌면, 의성읍 철파리·업리, 원당리 일부(원당고가교 종점을 기준으로 구분)를 제외한다], 고령군(쌍림면 송림리·산당리·백산리·합가리·매촌리·하거리는 제외한다), 청도군(청도읍 유호리·고수리·초현리·원리·월곡리·신도리, 화양읍 범곡리·동상리·동천리·합천리·서상리·신봉리, 풍각면, 각남면은 제외한다)
--	--	---

[별표 3]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1항 관련)

소속	명칭	위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충청남도 서천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전라남도 해남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	전라남도 보성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경상남도 거창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경상북도 울진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경상북도 상주시

[별표 1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9조의2 관련)

1. 국토교통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주택토지실 청년주거 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철도국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3명 (5급 1명, 6급 2명)	2025년 9월 30일까지
3) 모빌리티자동차국 도 심항공교통정책과	2명 (6급 1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철도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3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철도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6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지하안전관리 (지방국토관리청)	2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건설현장 안전점검 (지방국토관리청)	13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⑤ (생략)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 · 첨단항공과 · 국제항공과 · 항공산업과 ·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운항과 · 항공기술과 · 항공교통과 · 항행위성정책과 · <u>항공자격</u> 팀 · 공항정책과 · 공항운영과 · 항공보안정책과 및 공항건설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u>항공자격팀장</u> 및 공항건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 ----- ----- ----- ----- <u>항공자격</u> <u>국제협력팀</u> ----- ----- ----- ----- ----- <u>항공자격국제협력팀</u>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첨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추진</u>
⑨ · ⑩ (생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⑪ · ⑫ 삭제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	⑬ -----

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개정 등 협상 지원

14.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15.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신설>

<신설>

16. · 17. (생략)

18.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⑭ ~ ⑰ (생략)

<신설>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3.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운영

14.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15.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교육정책의 운영

16.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의 수립·관리

17. 항공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11. · 12. (현행 제16호 및 제17호와 같음)

18. 외국인 항공종사 고용에 관한 검토·추진

⑭ ~ ⑰ (현행과 같음)

16.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의 수립·관리

<신 설>

<신 설>

⑭ ~ ⑰ (생 략)

⑱ 항공자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 · 운영

4.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교육정책의 운영

<신 설>

<신 설>

6. · 7. (생 략)

8.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의 수립 · 관리

<신 설>

17. 항공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18. 외국인 항공종사 고용에 관한 검토·추진

⑭ ~ ⑰ (현행과 같음)

⑱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6.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7.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 · 개정 등 협상 지원

3. · 4.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9. 이사회 · 항행위원회 등 국제

9. (생략) 10. <u>항공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u> 11. <u>외국인 항공종사자 고용에 관한 검토·추천</u> ①⑨ ~ ②② (생략)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으로 보한다. ② ~ ⑥ (생략) 제61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③ ~ ⑥ (생략)	<u>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u> 5. (현행 제9호와 같음) 10. <u>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u> <삭제> ①⑨ ~ ②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 -----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2026년 12월 31일</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022</u>		<u>1,013</u>	-9	
일	반	직					
		계		•	•		
		•	•	•	•		
			<u>1,012</u>		<u>1,003</u>	-9	
		•	•	•	•		
		•	•	•	•		
철	도	경					
찰	사	무					
관	•	행					
정	사	무					
관	•	통					
계	사	무					
관	•	공					
업	사	무					
관	•	환					
경	사	무					
관	•	향					
공	사	무					
관	•	시					
설	사	무					
관	•	전					
산	사	무					
관	또	는					
방	송	통					
신	사	무					
관							
		•	•	•	•		
		•	•	•	•		
행	정	사					
무	관	또					
관	는	시					
		설					
		사					
		무					
		관					
		•	•	•	•		
		•	•	•	•		
향	공	사					
무	관						
			<u>17</u>		<u>16</u>	-1	

철도경찰주사	<u>3</u>	<u>2</u>	-1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 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 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u>65</u>	<u>64</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54</u>	<u>53</u>	-1
·	·	·	
·	·	·	
전산주사	<u>5</u>	<u>4</u>	-1
·	·	·	
·	·	·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8</u>	<u>7</u>	-1
·	·	·	
·	·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27</u>	• <u>1,018</u>	-9
일반직 계	• • <u>1,017</u>	• • <u>1,008</u>	-9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철도 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18</u>	• • <u>16</u>	-2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u>67</u>	• • <u>66</u>	-1
항공사무관	• <u>17</u>	• <u>16</u>	-1
철도경찰주사	• <u>3</u>	• <u>2</u>	-1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 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 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 ·	<u>63</u> · ·	<u>62</u> · ·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 ·	<u>49</u> · ·	<u>48</u> · ·	-1
전산주사 · ·	<u>4</u> · ·	<u>3</u> · ·	-1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 ·	<u>8</u> · ·	<u>7</u> · ·	-1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345	1,333	-12
일반직 계	1,345	1,333	-12
행정주사	40	38	-2
시설주사	151	150	-1
공업주사보	27	26	-1
시설주사보	216	213	-3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111	109	-2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207</u>	<u>205</u>	-2
•	•	•	
•	•	•	
전기운영서기보	<u>3</u>	<u>2</u>	-1
•	•	•	
•	•	•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1,345		1,333	-12	
일반직	계		1,345		1,333	-12	
행정주사	.		37		35	-2	
시설주사	.		144		143	-1	
공업주사보	.		27		26	-1	
시설주사보	.		211		208	-3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		111		109	-2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207</u>	<u>205</u>	-2
•	•	•	
•	•	•	
전기운영서기보	<u>3</u>	<u>2</u>	-1
•	•	•	
•	•	•	

[별표 1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504</u>	<u>501</u>	-3
일반직 계	<u>504</u>	<u>501</u>	-3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61</u>	<u>160</u>	-1
•	•	•	
철도경찰서기	<u>195</u>	<u>194</u>	-1
철도경찰서기보	<u>62</u>	<u>61</u>	-1
•	•	•	
•	•	•	

[별표 11의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504</u>	<u>501</u>	-3
일반직 계	<u>504</u>	<u>501</u>	-3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57</u>	<u>156</u>	-1
•	•	•	
철도경찰서기	<u>195</u>	<u>194</u>	-1
철도경찰서기보	<u>62</u>	<u>61</u>	-1
•	•	•	
•	•	•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12</u>	<u>609</u>	-3
일반직 계	<u>612</u>	<u>609</u>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항공주사 또는 시설주사	<u>2</u>	<u>1</u>	-1
·	·	·	
·	·	·	
항공주사보	<u>168</u>	<u>166</u>	-2
·	·	·	
·	·	·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12</u>	<u>609</u>	-3	
일반직	계			<u>612</u>	<u>609</u>	-3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2	1	-1	
또는	시설주사						
		•		•	•		
		•		•	•		
항공주사보				<u>168</u>	<u>166</u>	-2	
		•		•	•		
		•		•	•		

[별표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0</u>		<u>39</u>	-1	
일반직	계		<u>40</u>		<u>39</u>	-1	
	.		.		.		
	.		.		.		
행정사무관			<u>7</u>		<u>6</u>	-1	
	.		.		.		
	.		.		.		

[별표 16의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35</u>	• <u>333</u>	-2
일반직 계	• <u>335</u>	• <u>333</u>	-2
3급 또는 4급 이하	• <u>334</u>	• <u>332</u>	-2

[별표 20]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2. 제6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u>2. 제61조</u> <u>제2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4</u> <u>년 12월 3</u> <u>1일)</u>	<u>2. 제61조</u> <u>제2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6년 12</u> <u>월 31일)</u>	
	.		.	.	
	.		.	.	